

# 7. 農漁村發展 特別措置法

法律 第4228號 1990年 4月 7日 公布

## 第1章 總 則

제1조(目的) 이 법은 農水産業의 발전을 도모하고 農漁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農水産業의 構造를 개선하여 生産性を 향상시키고 農漁村工業을 육성하는등 農漁村의 所得源을 확충하며 生活環境을 개선하여 農漁村을 快適한 生活空間으로 造成함으로써 農漁民의 福祉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農水産業”이라 함은 農業·林業·畜産業 및 水産業을 말하며 그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2. “農漁民”이라 함은 農水産業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3. “農漁村”이라 함은 郡의 地域과 市의 地域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4. “農水産物”이라 함은 農産物·林産物·畜産物 및 水産物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農地”라 함은 田·畜 또는 果樹園 기타 地籍法에 의한 地目 外하에 불구하고 事實上 農作物의 耕作에 이용되는 土地와 그 改良施設(溜池·揚排水施設·水路·農路·堤防 기타 農地の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施設을 말한다)의 敷地를 말한다.

6. “農漁村道路”라 함은 農漁村의 生活과 農水産物の 生産 및 輸送에 주로 이용되는 道路로서 道路法 第2條의 道路외의 道路를 말한다.

7. “農漁村用水”라 함은 農漁村地域에 필요한 生活用水·農業用水·工業用水와 環境汚染의 방지를 위한 用水를

말한다.

## 第2章 農水産業의 構造改善

제3조(專業農漁家の 육성) ①農林水産部長官은 農水産業의 經營規模의 적정화와 經營合理化를 도모함으로써 生産性を 향상시킬 수 있도록 3年 이상 農水産業의 經營에 종사하고 있는 者로서 農水産業의 經營能力과 意慾이 있는 農漁家를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專業農漁家로 육성한다.

②農林水産部長官은 專業農漁家の 經營資産이 農水産業을 經營하거나 經營하고자 하는 相續人 또는 讓受人에게 一括하여 移轉되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4條(農漁民後繼者の 육성) ①農林水産部長官은 農漁村에 定着하여 農水産業을 經營하고 있거나 經營할 意思가 있는 靑少年을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農漁民後繼者로 선정하고, 農漁民後繼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農林水産部長官은 農漁民後繼者중 第3條第1項에 해당하는 農漁民後繼者를 우선적으로 專業農漁家로 육성하여야 한다.

③國家·地方自治團體 및 農水産物의 生産者團體(이하 “生産者團體”라 한다)의 長은 農漁民後繼者의 육성·지원에 적극 協調하여야 한다.

第5條(農業機械化의 促進) ①農林水産部長官은 農業機械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農業機械의 生産·普及, 共同利用의 促進, 이용·整備등에 관한 教育訓練, 部品의 원활한 供給등 事後奉仕 및 試驗·研究·調査등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强구하여야 한다.

②農林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者에게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1. 農漁民 및 生産者團體
2. 農業機械의 共同利用組織
3.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4.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委託營農會社
5. 農業機械의 事後奉仕業所·農業機械 및 部品生産業體

第6條(營農組合法人の 육성) ①農民은 農業經營의 合理化로 農業生産性の 향상과 農家所得의 増大를 도모하기 위하여 營農組合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②營農組合法인은 法人으로 하며, 農地를 所有할 수 있다.

③營農組合法인은 그 名稱중 營農組合法人이라는 名稱을 사용하여야 하며, 營農組合法인이 아닌 者는 營農組合法

人이라는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營農組合法人の 組合員이 될 수 있는 者는 당해 市·郡에서 3年이상 營農에 종사하고 있는 小規模 經營農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이 정하는 者로 한다.

⑤營農組合法人を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5人 이상의 農民이 共同으로 定款을 작성하고, 기타 設立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⑥營農組合法人は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⑦營農組合法人の 設立·出資·事業·定款 記載事項·解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⑧營農組合法人は 農業協同組合法 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農業協同組合의 準組合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第7條(委託營農會社의 육성) ①農民의 農業勞動力의 부족등으로 農業經營이 곤란한 農家의 營農의 편의와 農業生産性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託營農會社를 設立할 수 있다.

②委託營農會社를 農業經營이나 農作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代行할 수 있다. 다만, 農家當 委託營農을 할 수 있는 規模는 3萬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委託營農會社에 대하여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④第1項의 委託營農會社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商法중 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8條(農漁家の 轉業支援) ①農林水産部長官은 다른 産業으로 轉業을 하고자 하는 農漁家中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農漁家에 대하여 安定된 轉業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業의 지원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職業訓練의 실시 및 就業의 알선
2. 轉業獎勵金의 지원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일정한 요건과 轉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農林水産部令으로 정한다.

第9條(經營資産을 移轉한 農漁家에 대한 지원) 農林水産部長官은 高齡·疾病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農水産業의 經營을 계속할 수 없는 農漁家中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農漁家가 經營資産을 一括하여 農漁民이나 農漁村振興公社에 移轉하는 경우에는 經營資産을 移轉한 당해 農漁家の 構成員에 대하여 第8條의 規定에 準하여 지원할 수 있다.

第10條(農水産特定研究事業의 실시) ①

政府는 農水産資源의 효율적인 開發·이용과 農水産業의 生産性의 향상을 위하여 農漁村指導機關·研究機關·관계大學 또는 관계專門家로 하여금 特定課題에 대한 共同研究 및 共同指導를 하게 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研究 및 共同指導를 하는 農漁村指導機關·研究機關·관계大學 또는 관계專門家에게 이에 필요한 出捐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11條(漁業構造改善의 促進등) ①農林

水産部長官은 漁業의 構造改善을 위하여 다음 各號에 관한 施策과 支援對策을 강구할 수 있다.

1. 水産資源保護와 漁業競爭力強化를 위한 漁船隻數의 調整에 관한 사항
2. 漁業別 標準漁船의 開發 및 이의 普及에 관한 사항
3. 漁船의 設備 및 裝備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漁業經營規模의 적정화 및 協業化등 漁業經營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漁港등 漁業基盤施設의 整備·補強에 관한 사항
6. 共同漁場등 漁場의 整備·開發에 관한 사항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農林水産部長官은 漁業資源의 상태등 漁業與件의 變化로 인하여 漁業構造의 개선이 요청되는 漁業에 대하여는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漁業을 構造改善促進對象漁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支援對策을 강구할 수 있다.

③水産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構造改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5年마다 漁業의 實態와 資源의 상태등에 관한 調査를 하여야 한다.

④農林水産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를 漁業構造의 개선을 위한 施策에 반영할 수 있다.

### 第3章 農水産物의 需給安定

#### 第1節 需給安定

第12條(農業觀測과 生産調整) ①農林水

産部長官은 價格의 振幅이 큰 農産物로서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品目에 대하여는 農業觀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農林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觀測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觀測協議會를 구성하여 이를 운영하되, 農業觀測協議會에는 農漁民·

關聯團體의 代表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農林水産部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觀測의 결과에 따라 農産物의 적정한 生産과 적정한 價格을 유지하기 위하여 生産者團體로 하여금 生産調整 또는 出荷調整을 하게 할 수 있다.

④農林水産部長官은 生産調整 또는 出荷調整을 위하여 生産與件등을 감안하여 農林水産部長官이 告示하는 品目에 대하여는 生産者團體로 하여금 生産農家와 生産調整 또는 出荷調整의 약정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⑤生産者團體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生産調整 또는 出荷調整을 약정한 경우에는 生産調整 또는 出荷調整의 약정을 이행한 農家가 出荷하는 당해 品目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價格(이하 “下限價格”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⑥政府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生産者團體가 出荷農家に 대하여 下限價格을 보장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損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填할 수 있다.

⑦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生産調整 또는 出荷調整의 약정의 내용 및 방법, 下限價格의 수준 및 決定方法, 下限價格을 보장하여야 할 對象物量, 損失補填의 限度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⑧農林水産部長官은 國內 需給安定을 위하여 政府가 輸入하는 農産物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品目에 대하여 國內生産調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13條(自助金の 積立支援) ①農林水産部長官은 特定農水産物을 生産하는 農漁民이 生産者團體를 組織하여 당해 農水産物의 販路擴大, 需給調節 및 價格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自助金を 造成·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生産者團體에 대하여 補助金を 支給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助金の 造成方法, 補助對象이 되는 農水産物과 補助金の 支給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國內産 農水産物의 販路擴大)

①農林水産部長官은 國內에서 생산되는 農水産物의 販路의 擴大와 販賣의 促進을 위함 施策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의 販路의 擴大와 販賣의 促進을 위하여 農漁民·生産者團體 또는 農水産物의 流通業을 영위하는 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15條(國內産 農水産物의 加工支援)

①農林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의 需給의 調節과 農漁家の 所得增大를 위하여 農水産物加工産業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漁民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産者團體가 食品製造·加工業등 農水産物을 加工하는 營業을 영위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1. 傳統食品등 農水産物加工品の 開發
  2. 加工施設의 設置 및 補修
  3. 加工原料로 사용되는 農水産物의 收買
  4. 加工·貯藏 및 流通의 개선을 위한 調査·研究事業
  5. 기타 運營資金의 지원등 加工業의 育成에 필요한 사항
- ③農林水産部長官은 國內産 農水産物의 加工促進과 品質改善을 위하여 研究機關 또는 農水産物加工業을 영위하는 者에게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 第2節 農水産物의 輸出入

第16條(農水産物의 輸出促進) ①政府는 農漁家의 所得을 增大시키고 農水産物의 需給調節을 위하여 農水産物의 輸出促進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政府는 農水産物의 輸出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貿易業者 또는 貿易에 關連되는 機關의 海外市場情報의

蒐集과 市場開拓을 지원하거나 補助金의 支給 또는 融資를 할 수 있다.

第17條(輸入自由化豫示) ①政府는 農水産物의 輸入制限을 解除(이하 “輸入自由化”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農漁家의 所得을 보호하고 國內資源을 효율적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②政府는 農水産物의 輸入自由化豫示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農漁家所得과 國民經濟에 미칠 영향등을 감안하여 自由化品目과 時期를 豫示할 수 있다.

第18條(輸入自由化에 따른 補完對策)

①政府는 農水産物의 輸入自由化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은 農漁家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農林水産部長官은 輸入自由化로 인하여 國內農水産業이나 農漁家의 所得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品目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에서 生産되는 당해 品目を 收買하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收買하도록 勸告할 수 있으며, 이 경우 輸入價格과 收買價格의 差額을 補填하여야 한다.

③農林水産部長官은 輸入自由化 또는 그 豫示로 인하여 農漁家가 당해 品目の 生産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다른 品目を 生産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助金을 支

給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第19條(審議會의 設置) ①政府는 農水産物의 輸入自由化에 따른 補完對策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輸入自由化對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設置하여 이를 運營하되, 審議會에는 農漁民·關聯團體의 代表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輸入補完支援 對象品目の 선정에 관한 사항
2. 輸入補完支援의 基準 및 節次에 관한 사항
3. 기타 輸入自由化補完對策과 관련된 사항

③審議會의 구성 및 運營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4章 農外所得源의 開發促進

第20條(農外所得源의 開發) 農林水産部長官은 農業외의 就業機會의 擴大와 農漁家所得構造의 高度化를 위하여 農漁村의 農業所得외의 所得源(이하 “農外所得源”이라 한다)을 開發 또는 육성하여야 한다.

第21條(農外所得增大計劃의 수립) ①農

林水産部長官은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開發基本方針에 따라 매년 農外所得增大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農外所得增大計劃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農漁村所得構造의 개선과 農外所得의 增大의 基本目標와 實踐計劃
2. 農工團地의 開發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가. 農工團地의 開發을 위한 豫算支援에 관한 사항
  - 나. 農漁村人力需給·就業訓練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農漁村特產品生産團地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農漁村休養地의 開發·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農外所得源의 開發 및 지원에 관한 사항

第22條(農工團地의 開發促進) ①市長·

郡守는 管轄地域안의 農外所得源을 開發하기 위하여 産業立地및開發에 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工團地를 지정하여 이를 開發한다.

②農林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매년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農外所得增大計劃에 따라 市長·郡守에게 農工團地의 開發에 필요한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③道知事は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 및 融資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에 의한 農工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결과를 農林水産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23條(公共施設의 우선 設置) 道路·上水道·電氣·電話 등 公共施設을 設置·管理하는 國家·地方自治團體와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은 農工團地의 開發事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施設을 農工團地안에 우선적으로 設置하여야 한다.

第24條(農工團地안의 農業외의 就業의 登錄 및 管理) ①農工團地에 就業하고자 하는 農漁民은 市長·郡守에게 就業에 관한 登錄을 하여야 하며 市長·郡守는 이를 管理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節次·登錄內容 및 管理에 관한 사항은 農林水産部令으로 정한다.

第25條(農業외의 就業의 訓練支援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漁民의 農工團地入住工場에의 就業에 필요한 職業訓練을 실시하고 雇傭情報提供·就業指導 및 就業斡旋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農工團地에 入住하여 工場

을 設置·운영하는 者(이하 “入住業者”라 한다)의 從業員訓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第26條(技術 및 經營指導) 中小企業進興公團 또는 農水産物流通公社는 市長·郡守 또는 入住業者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技術 및 經營에 관한 指導를 하여야 한다.

第27條(生産製品의 販賣支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工團地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産品團地에서 生産된 製品의 販賣를 促進하기 위하여 당해 製品生産者와 國家·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과의 隨意契約을 擴大하고 輸出의 지원 및 系列化의 促進 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28條(農漁村環境의 보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入住業者가 環境保全法 第2條第14號의 防止施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第29條(農漁村特産品生産團地의 지정과 육성) 市長·郡守는 農漁村의 賦存資源과 遊休勞動力을 효율적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農漁村特産品生産團地(이하 “特産團地”라 한다)를 지정하여 이를 육성할 수 있다.

第30條(農漁村休養地의 開發) ①市長·郡守는 農漁村地域안의 自然景觀을 보



전하며 農漁村所得増大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農外所得増大計劃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漁村休養地를 지정하여 이를 직접 開發하거나 農漁民團體·農漁村進興公社 또는 그 地域에서 農漁村所得源의 開發事業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者(이하 “農漁民團體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開發하게 할 수 있다.

市長·郡守 또는 農漁民團體 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漁村休養地를 開發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水産部長官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다음 施設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休憩所등 便益施設
2. 養魚場등 農水産物生産施設
3. 販賣場등 販賣施設
4. 野營場등 宿泊施設
5. 進入路등 基盤施設
6. 기타 農漁村休養地의 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施設

③農漁民團體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漁村休養地를 開發하고자 할 때에는 그 事業計劃을 수립하여 市長·郡守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市長·郡守 또는 農漁民團體등이 事業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地域의

住民으로부터 의견을 聽取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妥當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事業計劃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市長·郡守가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⑥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農漁村休養地의 開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31條(보고) ①市長·郡守는 매년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農外所得増大計劃의 推進實績을 綜合作成하여 다음 年度 1月末까지 管轄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道知事は 매년 市長·郡守로부터 보고받은 農外所得増大計劃의 推進實績을 보고받은 날부터 1月 이내에 農林水産部長官에게 綜合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第5章 農漁村定住生活圈 開發

第32條(農漁村定住生活圈의 開發) 政府는 農漁村地域의 生活環境, 産業基盤 및 편익·福祉施設등을 綜合적으로 整備·확충하고 農漁民의 福祉를 향상시

키기 위하여 農漁村定住生活圏(이하 “定住生活圏”이라 한다)을 開發하여야 한다.

**第33條(定住生活圏의 開發對象地域)** 定住生活圏의 開發은 面의 地域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邑·面의 地域을 포함할 수 있다.

**第34條(定住生活圏開發計劃의 수립)** ① 郡守는 定住生活圏의 開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域住民의 의견을 들은 후 定住生活圏開發計劃(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郡農漁村發展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중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都市計劃이 수립된 地域에 대하여는 당해 都市計劃에 따라 定住生活圏을 開發할 수 있다.

② 郡守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管轄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고 一般에게 閱覽시켜야 한다.

③ 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計劃을 승인할 때에는 道農漁村發展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 이를 農林水産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35條(開發計劃의 내용)** 開發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定住生活圏開發의 整備·開發
2. 農漁村聚落의 整備·開發
3. 農漁村道路의 整備·開發
4. 文化福祉施設의 擴充
5. 農工團地등 所得源開發事業과 連繫한 生活環境의 整備·확충
6. 農漁村用水와 排水의 開發과 그 施設의 整備·확충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第36條(事業의 施行)** ① 軍수가 開發計劃에 따라 定住生活圏開發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計劃을 수립하여 郡農漁村發展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② 郡守는 事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事業을 委託하여 施行하게 할 수 있다.

**第37條(定住生活圏開發事業費의 지원등)**

① 政府는 定住生活圏開發을 위한 10個年計劃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定住生活圏開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農水産物의 輸入으로 인하여 徵收되는 關稅額의 상당액을 매년 歲出豫算에 計上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

團體의 長은 開發計劃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業費를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④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定住生活圈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漁民, 生産者團體, 기타 定住生活圈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者에게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第38條(定住生活圈開發委員會) ①다음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水産部에 定住生活圈開發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定住生活圈의 開發에 관한 基本計劃
2. 年次別 推進計劃
3. 開發對象地域의 선정
4. 豫算의 지원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長은 農林水産部長官으로 한다.

④委員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次官 또는 廳長과 해당분야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많은 者 중에서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로 한다.

⑤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9條(企業技術支援團의 운영) ①政府

는 開發計劃의 수립에 따른 設計 및 執行上의 技術支援을 위하여 企劃技術支援團을 設置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企劃技術支援團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6章 農業振興地域의 지정·運用등

第40條(農業振興地域의 지정) ①政府는 農地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農業의 生産性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業振興地域(이하 “振興地域”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振興地域은 다음各號의 用途區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農業振興區域: 상당한 規模로 農地가 集團化된 地域으로서 農業目的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地域
2. 農業保護區域: 農業振興區域의 農業環境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域

第41條(振興地域의 指定對象) 振興地域은 國土利用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耕地地域과 都市計劃法 第17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綠地地域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서울特別市와 直轄市地域의 綠地地域은 제외한다.

第42條(振興地域의 指定節次) ①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市·道農漁村發展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農林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振興地域을 指定한다.

②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振興地域을 指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고 關係機關에 通報하여야 하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一般에게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③農林水産部長官은 都市計画法 第17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綠地地域이 振興地域에 포함될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振興地域의 指定을 승인하기 전에 建設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振興地域의 用途區域指定要件과 節次 기타 振興地域의 指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3條(振興地域등의 變更) ①市·道知事は 大統領令이 定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第42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振興地域 또는 用途區域을 變更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은 市·道農漁村發展審議會의 審議와 農林水産部長官의 승인없이 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

여 振興地域 또는 用途區域을 變更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고 關係機關에 通報하여야 하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 하여금 一般에게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第44條(用途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農業進興區域안에서는 農水産業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土地利用行爲를 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農業保護區域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은 農業環境을 보호하는 目的의 범위내로 하되, 그 제한의 구체적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振興地域의 指定당시 同地域안에 있는 기존의 建物·工作物 기타 施設과 關係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物의 建築, 施設의 設置, 土地의 形質變更등에 관하여 認可·許可 또는 승인을 얻어 事業을 施行중에 있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5條(振興地域에 대한 開發投資의 擴大) ①政府는 振興地域에 대하여 農地 및 農業施設의 改良·整備와 農産物流通施設의 확충 기타 農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投資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振興地域안의 農地를 耕作하는 農民에 대하여는 金融·稅制上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農業生産性

의 향상과 農家所得의 增大를 도모하여야 한다.

第46條(農漁村用水計劃등) 農林水産部長官은 農漁村用水의 효율적인 開發·보전 및 管理를 위하여 農漁村用水利用 合理化計劃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農林水産部長官은 農漁村用水의 體系的인 開發과 합리적인 이용·配分 및 水質管理·보전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漁村用水區域을 設定하여 이를 運用할 수 있다.

③農林水産部長官은 農漁村用水區域을 設定하여 이를 告示하고 農漁村用水區域안의 합리적인 用水開發·보전 및 管理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47條(農地轉用과 이음의 特例) ①農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는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事項, 同項 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任意轉用事項, 同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 同法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同意·승인사항 또는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53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事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第4條第1項·第2項 및 第5條第1項과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53條에 規定된 節

次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賃貸借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農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이하 “農地管理委員會”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고 農地를 轉用할 수 있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 이하의 農家住宅·農業用施設의 設置
2.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 이하의 어 린이놀이터·마을회관등 農漁民의 共同生活의 편의를 위한 施設의 設置
3.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 이하의 養魚場·養殖場등 漁業用施設의 設置

②農地에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多年性 植物 또는 觀賞樹를 栽培하고자 하는 者는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第2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栽培하거나 植栽할 수 있다. 다만, 觀賞樹를 栽培하거나 植栽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農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의 확인을 받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協議·同意·승인 또는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轉用된 土地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 이내에 다른

目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第7章 農漁村發展計劃의 수립

第48條(農漁村發展基本方針) ①農林水産部長官은 農漁村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農漁村發展基本方針(이하 “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農林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方針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農漁村發展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③第1項의 基本方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農漁村發展의 目標와 基本方向
2. 農水産業의 構造改善
3. 農水産物의 需給安定
4. 農水産物加工産業의 육성
5. 農工團地등 農外所得源의 開發
6. 定住生活圈의 開發
7. 振興地域에 대한 投資擴大에 관한 사항
8. 기타 農漁村의 발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49條(道農漁村發展計劃) ①道知事는 그 管轄區域안의 農漁村의 발전을 위하여 第48條의 基本方針에 따라 道農漁村發展計劃(이하 “道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農林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道知事는 道農漁村發展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道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第50條(市·郡農漁村發展計劃) ①市長·郡守는 그 管轄區域안의 農漁村의 발전을 위하여 第49條의 道計劃에 따라 市·郡農漁村發展計劃(이하 “市·郡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公告하여야 한다.

第51條(基本方針등의 變更) 農林水産部長官,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基本方針, 道計劃 또는 市·郡計劃을 變更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第48條·第49條 또는 第50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이를 變更하여야 한다.

第52條(農漁村發展審議會) ①基本方針, 道計劃 및 市·郡計劃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水産部에 中央農漁村發展審議會(이하 “中央審議會”라 한다)를, 市·郡에 市·郡農漁村發展審議會(이하 “市·郡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中央審議會는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方針과 農林水產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農漁村의 발전을 위한 사항에 관하여 審議한다.

③農漁村發展審議會는 事業別로 分科審議會를 둘 수 있으며, 中央審議會, 道審議會 및 市·郡審議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8章 農漁村發展基金

第53條(基金의 設置) 政府는 農漁村의 발전과 農水産業의 構造改善을 위한 事業의 추진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供給하기 위하여 農漁村發展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54條(基金의 造成)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出捐金
2.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3.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債券의 발행으로 造成되는 基金
4. 政府出資機關·다른 基金·團體 또는 개인의 出捐金
5. 이 法 施行 당시의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農業機械化促進基金·水產振興基金 및 農漁村地域開發基金의 資金

및 財産

6. 基金運用收益金

第55條(基金事業의 內容) 基金으로 지원할 수 있는 事業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말한다.

1. 農水産業의 構造改善
2. 轉業하고자 하는 農漁家에 대한 職業訓練 및 就業斡旋
3. 農漁村人力의 開發을 위한 農漁民後繼者 및 專業農漁家의 育成
4. 農工團地·特産團地·農漁村休養地등 農外所得源의 開發
5. 農水産物加工産業의 育成
6. 農業機械化事業
7. 農水産物輸入自由化의 豫示에 따른 補完對策과 農水産物의 輸出促進
8. 定住生活圈開發事業
9. 기타 農漁村의 발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第56條(資金의 借入) 農林水產部長官은 基金의 運用上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投融資特別會計등 政府會計·金融機關·外國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第57條(債券의 발행) ①政府는 基金의 運用上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漁村發展債券(이하 “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債券은 農林水產部長官의 요청에 위

하여 基金의 부담으로 財務部長官이 발행한다.

③政府는 債券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④政府는 債券을 額面金額으로 발행하거나 割引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⑤이 法에 規定된 것 외에 債券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債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8條(基金의 運用·管理)** ①基金은 農林水産部長官이 運用·管理한다.

②農林水産部長官은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協同組合中央會·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中央會”라 한다)에 委託할 수 있다.

③債券의 교부 및 償還業務와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委託事務를 취급함에 따른 手數料는 基金의 부담으로 하되, 그 手數料率 및 支給方法등은 農林水産部長官이 정한다.

④基金은 企業會計의 原則에 의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第59條(基金의 用途)**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로 運用한다.

1.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各號의 事業을 위한 補助 또는 融資
2. 農漁民後繼者 및 專業農漁家の 指導

·教育·事後處理등 육성에 필요한 經費의 支出

3. 基金의 運用·管理에 필요한 經費의 支出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補助 또는 融資의 대상이 되는 事業과 補助 또는 融資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農林水産部長官은 基金에 餘裕資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方法으로 運用할 수 있다.

1. 金融機關에의 預置
2. 國·公債의 買入
3. 財政投融資特別會計가 다른 基金에의 預託

**第60條(基金運用審議會의 設置)** ①基金의 運用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水産部에 農漁村發展基金運用審議會(이하 “基金運用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1. 基金運用計劃
2. 기타 基金運用上 重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基金運用審議會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1條(基金運用計劃)** ①農林水産部長官은 基金運用審議會에서 審議된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基金의 運用規模
2. 당해 會計年度의 補助 또는 融資의 計劃
3. 基金의 收入·支出에 관한 사항

第62條(基金의 會計機關) ①農林水産部長官은 소속 公務員 중에서 基金의 支出原因行爲와 徵收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는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의 支出 및 收入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는 基金出納 公務員을 任命하여야 한다.

②農林水産部長官은 第5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의 일부를 委託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中央會의 任·職員중에서 당해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會計關係職員을 任命할 수 있다.

③會計關係職員等の 責任에 관한 法律중 財務官과 歲入徵收官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 또는 그 職務를 委託받아 수행하는 者에게, 支出官과 出納 公務員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 公務員 또는 그 職務를 委託받아 수행하는 者에게 準用한다.

第63條(基金의 收入과 支出) ①基金은 出捐金·借入金, 債券의 發行으로 造成되는 資金·轉入資金·轉入財産의 賣却代

金, 回收金·利子收入 기타 基金의 運用으로 발생하는 收益을 그 收入으로 한다.

②基金은 補助 또는 融資金, 借入金 및 發行債券의 元利金の 償還金, 預託金·債券發行費用·財産賣却費用, 農漁民後繼者 및 專業農漁家の 指導·教育·事後管理등의 費用과 그 支出로 한다.

第64條(融資金의 回收) 第58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을 받은 中央會는 融資를 받은 者가 그 資金을 融資目的에 위반하여 다른 用途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償還期日전이라도 融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回收할 수 있다.

第65條(決算報告) 農林水産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前年度의 基金運用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 다음 會計年度 3月 20日까지 財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66條(監督과 命令) 農林水産部長官은 이 法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를 委託받은 中央會에 대하여 監督上 필요한 범위안에서 基金의 運用·管理狀況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書類의 제출을 命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第9章 補 則

### 第67條(다른 法令에 의한 許可등의 擬

制) ①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가 農漁村休養地를 직접 開發하기 위하여 農漁村休養地를 지정하거나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漁民團體등이 農漁村休養地開發에 관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郡守가 開發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協議·同意·免許·解除 또는 승인(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農漁村休養地를 開發하고자 하는 者의 경우에는 第1號 내지 第12號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1.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轉用許可와 同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2.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3.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開墾許可 및 同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農地의 轉用許可
4.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形質變更行爲등의 許可, 同法 第24

條의 규정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5.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の 開設許可
6. 河川法 第6條 規定에 의한 事業의 協議 또는 승인,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非管理廳의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등의 許可
7. 水道法 第13條(同法 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8.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 사용의 許可
9.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의 免許
10.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및 同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協議·同意 또는 승인
11.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許可
12. 道路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의 協議 또는 승인,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の 許可

13. 酪農振興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酪農地帶안에서의 土地形質變更등의 許可

14.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 轉用の 許可

15. 水産業法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水面區域안에서의 工事施行의 協議

16.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 關한 特別 措置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形質變更등의 許可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施行하는 者가 建築法에 의한 建築許可 및 竣工檢査畢證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檢査·同意·승인을 얻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1.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 占用の 許可 및 同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接道區域안에서의 土地形質變更등의 許可

2. 下水道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 또는 工作物의 設置許可 및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 設置의 申告

3. 水道法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敷設의 許可와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全用水道敷設의 竣工檢査 및 水質檢査

4. 電氣事業法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電氣工作物의 工事計劃의 認可

및 同法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 電氣工作物의 工事計劃의 申告

5. 消防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新築등의 許可·확인에 대한 同意, 同法 第42條의10의 規定에 의한 消防設備工事 施行의 申告 및 完工檢査,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危險物의 製造所등의 設置許可 및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危險物의 製造所등의 完工檢査

6. 建築法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假設 建築物의 建築許可 및 申告

7. 電氣通信工事業法施行令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構內通信線路設備工事의 竣工檢査

③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가 農漁村休養地를 직접 開發하기 위하여 農漁村休養地를 지정하거나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漁民團體등에 대하여 農漁村休養地의 開發에 關한 事業計劃을 승인할 경우 또는 道知事가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計劃의 승인을 할 경우에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68條(다른 法令의 準用) ①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定住生活圈開發事業의 施行과 關한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

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關聯規定을 準用한다.

1. 換地業務: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3조 내지 제133조와 제169조 및 제170조

2. 交換·分合業務: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

3. 土地의 收用·사용 및 補償: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4조 내지 제158조

4. 權利의 調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9조 내지 제163조

5. 測量·檢査 또는 書類등의 閱覽: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8조

6. 地籍測量: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6조

②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農工團地의 開發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第69條(土地收用) ①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定住生活圈開發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그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土地收用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물건 또는 權利를 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計劃의 승인 또는 그 告示가 있을 때에는 土地收用法 第14條 또는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또는 事業認定의 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

은 同法 第17條 및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開發計劃을 승인함에 있어서 정한 事業의 施行期間내에 하여야 한다.

第70條(許可取消등) ①農林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事業을 施行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認可·승인·許可 또는 지정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中止, 物건의 改築·變更·移轉·제거의 措置를 命하거나 기타 필요한 處分을 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命이나 處分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認可·승인·許可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事情의 變更으로 인하여 事業의 계속적인 施行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農林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措置를 命하거나 處分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農林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이나 措置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事業施行者 또는 그 代理人의 출석을 요구하여 聽聞을 행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경우에 農林水産部長官은 處分을 하고자 하는 사유와 聽聞期日 및 場所를 期日 1週日전에 당해 事業 施行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71條(보고 및 檢査) ①農林水産部長官은 이 法の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事業을 施行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第2項의 證票에 관한 사항은 農林水産部令으로 정한다.

第72條(租稅의 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에 의한 農漁村의 발전을 위한 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租稅減免規制法 또는 地方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第73條(測量·設計 또는 工事監理의 委任) ①이 法에 의한 計劃을 수립하는 者 또는 事業을 施行하는 者는 필요한 경우에는 事業의 測量·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農漁村振興公社에 위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委託者가 그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第74條(權限의 委任·委託등) 農林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の 規定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村振興廳長, 山林廳長, 水産廳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에게 委任하거나, 生産者團體·政府投資機關·政府出捐機關 또는 農水産關聯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第7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 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4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轉用된 土地를 승인없이 다른 目的으로 사용한 者

第76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 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함에 있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申告한 者
2.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檢査資料를 제출한 者
3. 第73條의 規定에 의한 測量·設計 또

는 工事監理를 함에 있어 허위의 書類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第7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5條 또는 第7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78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4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확인 및 申告 없이 農地를 轉用하거나 觀賞樹를 栽培하거나 植栽한 者

2.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同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전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水産部長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告知된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2條의 規定은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①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
2.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法
3. 農漁村地域開發基金法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の 農工地區관련 사항은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의 施行日 前日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의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農

業機械化促進基金·水産振興基金과 農漁村地域開發基金에 관한 債權·債務等 一切의 權利·義務는 이 法 施行日 前日을 基準으로 하여 이 法 施行으로 設置되는 基金이 承繼한다. 다만, 農漁村地域開發基金중 農漁村進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農地管理基金이 承繼하는 農地購入資金融資의 債權과 同 基金의 債務의 일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 施行 당시의 融資金 및 預託金 등에 관한 金利 기타 조건은 이 法에 의하여 따로 정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を 貸與받은 機關은 당해 融資금이 回收될 때까지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會로 본다.

④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이 1990年度 運用計劃은 이 法 施行전에 國會에 제출된 “1990年度 農漁村發展基金運用計劃”으로 같음한다.

⑤1990年度 政府歲出豫算에 計上된 農漁村地域開發基金의 財政投融資特別會計의 出捐金중 農地購入資金を 제외한 出捐金과 農漁民投融資特別會計의 融資金 및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 農業機械化資金의 財政投融資特別會計의 融資金은 基金에 計上된 것으로 본다.

#### 第4條(農漁民後繼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 法에 의하여 선정된 農漁民後繼者는 이 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第5條(副業團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에 의하여 지정된 副業團地는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特産團地로 본다.

#### 第6條(絶對農地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振興地域이 지정·告示된 市·郡地域의 農地에 대하여는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第2條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한 絶代農地와 相對農地의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同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絶對農地에 대하여는 그 지정·告示를 廢止한 것으로 본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時期까지 振興地域을 지정·告示하지 아니한 地域의 農地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絶對農地·相對農地의 구분이 廢止된 地域의 農地에 대하여는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第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絶對農地는 “振興地域안의 農地”로, 同法 第4條第4項 및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對農地”는 “振興地域밖의 農地”로 본다.

####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業機械化

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 내지 第10條를 각각 削除한다.

②水産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 및 第17條를 각각 削除한다.

③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6號를 第7號로 하고, 同項에 第6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6. 農業機械化促進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機械化事後奉仕業所 第2條第2項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銀行法 第3條第1項의 金融機關

④農地擔保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條(農地抵當機關) 이 法에 의하여 農地抵當權者가 될 수 있는 者를 農業協同組合·水産業協同組合·畜産業協同組合·山林組合과 그 中央會 및 銀行法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이하 “農地抵當機關”이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民法에 의하여 設定되는 抵當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第2項第3號를 第4號로 하고, 同項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12條第6項에 의한 損失補填과 同條第8項

에 의한 生産調整을 위한 지원

⑥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의3第1項에 第2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3.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인과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委託營農會社 第110條의3第2項에 第2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4.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特産團地안에서 特産品을 生産하는 者가 취득하는 事業用 財産. 다만, 取得日부터 1年이 내에 正當한 사유없이 그 固有業務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免除된 取得稅를 追徵한다.

第128條의2第2項에 第2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5.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特産團地안에서 特産品을 生産하는 者가 취득하는 事業用 財産에 대한 登記

第198條第3項을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인이 農地所得을 얻은 경우에는 出資한 農民이 그 特分에 의하여 分配되었거나 分配될 農地所得金額에 따라 각각 農地稅의 納稅義務를 진다.



### ◀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制定理由 ▶

國民經濟의 成長過程에서 相對的으로 成長惠澤을 적게 받은 農漁村이 最近의 輸入 開放壓力등 國際經濟與件의 變化로 어려움이 加重된 現實을 勘案하여 農水產業經營의 適正規模化등의 方法으로 農水產業의 構造를 改善하여 生産性을 向上시키고, 農漁村工業의 育成등의 方法으로 農漁村所得源을 擴充하여 零細農등 就業希望農漁民의 就業機會를 增大시키며, 農漁村의 生活環境을 改善하여 農漁村을 快適한 定住生活空間으로 造成함으로써 農漁村에서도 都市에 못지 아니한 所得과 生活福祉를 享有하게 하고자 中長期農漁村發展計劃을 樹立하여 施行하고, 이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하기 위하여 農漁村發展基金을 設置하는등 農漁村問題解決에 그동안 蓄積된 우리의 經濟力을 바탕으로 集中的인 支援을 하여 農漁民의 福祉向上과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圖謀하려는 것임.

### ◀ 主要骨子 ▶

1. 轉業農漁家·農漁民後繼者·營農組合法人 및 委託營農會社를 育成·支援하고 産業機械化의 促進과 農水產業特定研究事業에 대한 支援을 함과 동시에 零細農漁家의 安定된 轉業을 支援함으로써 農水產業의 構造改善을 促進하도록 함.
2. 農業觀測의 結果에 따라 農業生産者團體의 自律的인 生産調整을 誘導하고, 이를 위하여 自助金의 積立을 支援함으로써 農産物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圖謀하도록 함.
3. 政府가 農水産物의 輸入을 自由化하고자 할 때에는 農水産物輸入自由化例示計劃을 樹立하여 例示하도록 하고, 輸入自由化에 따른 補完對策을 講究함으로써 農漁民의 所得을 保護하고 國內資源을 效率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함.
4. 農水産業의 構造改善促進과 農漁家所得增大를 圖謀하기 위하여 農工團地造成등의 方法으로 農漁村工業을 積極開發하고 필요한 技術·經營指導와 販賣促進의 支援을 하도록 함.

5. 農漁村地域의 環境, 產業基盤, 便益·福祉施設을 綜合的으로 整備·擴充함으로써 農漁民의 福祉向上을 圖謀하기 위하여 面地域 全體를 農漁村定住生活圈으로 開發하도록 하고, 定住生活圈開發에 필요한 財源調達을 위하여 輸入農水産物에 대한 關稅額증 相當額을 歲出豫算에 計上하도록 함.
6. 農地를 效率的으로 利用·保全함으로써 農業의 生産性を 向上시킴을 위하여 境地域·綠地地域등을 農業進興區域 및 農業保護區域으로 細分되는 農業振興地域으로 指定하고, 農業振興地域에 대하여 農業基盤施設등 集中的인 投資를 하도록 하며, 農業振興地域이 指定된 郡의 地域에서는 絶對農地의 指定·告示를 廢止한 것으로 보도록 함.
7. 農地의 轉用 및 利用에 관한 特例를 정하여 農地의 轉用 및 利用規制를 緩和함으로써 農漁村의 所得源開發과 作目選擇을 容易하게 하고, 便益施設의 設置등 農漁民의 便益을 圖謀하도록 함.
8. 農漁村의 均衡있는 發展을 위하여 農林水産部長官은 農漁村發展基本方針을 中央農漁村發展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樹立하고, 이에 따라 道知事는 農漁村發展計劃을, 市長·郡守는 市·郡農漁村發展計劃을 각각 樹立·施行하도록 함.
9. 農漁村發展과 農水産業의 構造改善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供給하기 위하여 農漁村發展基金을 設置하여 同基金에서 轉業農漁家育成·農工團地開發·加工産業育成·輸入補完對策·輸出促進·定住圈開發事業등에 필요한 資金을 支援할 수 있도록 함.
10.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法 및 農漁村地域開發基金法을 각각 廢止하고, 同法의 內容을 이 法에서 受容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